

종합 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종합감사 -

2020. 8. .

처분요구일람표

1. 정원관리 부적정 (시정)
2. 계약직(행정원) 채용 부적정 (주의)
3. 성과급 지급 부적정 (주의)
4. 피복비 집행 부적정 (주의)
5. 기술가치평가 없이 특허 등 기술출자 (주의)
- 6 연구수당 과다 지급 (통보)
- 7 탄소성형부품 상용화인증센터 건축공사비 과다 계상 등 (시정 및 통보)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정원관리 부적정
소 관 청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률 제27조와 「지방 출자·출연 인사·조직지침」Ⅳ-가. 조직과 정원 운용에 따르면 조직과 정원에 관한 내부규정에는 조직별·직급별 정원을 명확하게 나타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정관 시행규칙」 제2조와 「직제규정」 제3조에 따르면 법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 ♀♂♂, ♡♡♡, 기업혁신지원실을 두며 각 실·본부에는 필요에 따라 부 또는 팀을 두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직원은 행정직, 연구직(연구개발), 연구직(장비지원)으로 구분하고, 직종별로 수석급, 책임급, 선임급, 원급 등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르면 승진은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직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하여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 조직과 정원관리를 할 때에는 적어도 조직별, 직급별 정원을 직제규정에 명확히 규정한 다음 결원발생시 승진임용을 하는 등 조직과 정원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위 규정과 다르게 조직별 정원 뿐만 아니라 직종별, 직급별 정원도 마련하지 아니한채 아래 [표]와 같이 기관 전체 정원 55명으로 정원관리를 하고 있었다.

[표] 연구원 정원표

구분	정원	비고
총 계	55	
원 장	1	
♂♂♂		
♀♀♀		
♡♡♡		

이에 최근 3년간 승진임용시 결원산정을 확인한 결과 2017. 4. 27. 행정원(주임)에서 선임급(대리)으로 승진임용한 <<<을 비롯하여 총 9명을 결원 산출도 없이 원장이 임의대로 승진인원을 산출, 승진임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직급별 정원이 없어 승진임용 등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고 부서별, 직급별 정원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원장은

「지방 출자·출연 인사·조직지침」Ⅳ-가. 조직과 정원 운용에 따라 조직별·직급별 정원을 명확하게 나타내도록 「직제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직(행정원) 채용 부적정
소 관 청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직원임용규정」 제2조와 제3조에 따르면 직원은 정규직원과 계약직원으로 구분하고,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자는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11조와 「계약직임용규정」 제2조에 따르면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자는 법인에서 정하는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고,

같은 규정〔별표2〕 계약직 임직원 직종·직급체계(채용및자격기준-행정직)에 따르면 행정원(사원)은 학사이상 학위 취득자,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다.

한편 위 관서에서는 2018. 3. 26. 회계 프로그램 전표입력 및 장부관리 등 사무를 담당할 계약직 행정원(주임급) 2명을 채용코자 직원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서류 및 면접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어 주임급에서 사원급으로 모집 직급을 변경기로 하였다.

따라서 계약직 행정원(사원)을 채용할 때에는 학사이상 학위 취득자 또는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근무경력자 등 임용예정 직종·직급에 해당하는 채용자격을 가진 자로 채용공고를 하고 그에 적합한 유자격자를 채용했어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8. 4. 9. 계약직 행정원(사원) 채용공고를 하면서 위 규정과 다르게 학사이상 학위 취득자 등으로 채용자격제한을 하지 않고 아무런 자격요건 없이 그대로 공고를 하였다.

그 결과 계약직 임용규정대로 공고하였다면 임용자격에 미달되어 응시원서조차

제출할 수 없는 ㉸㉸㉸(2018.5. 기준 ㉸㉸고 졸, i i 대 휴학)이 같은 해 4. 24. 최종 합격되었고, 감사일 현재까지도 근무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원장은

앞으로는 계약직임용규정에 미달하는 자를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성과급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 산하기관·단체 경영평가결과」(경상북도)에 따르면 임직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의 지급대상은 정관상 정원에 포함된 정규직원으로 연봉(보수)월액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연봉(보수)는 평가대상연도 기준으로 산정토록 되어 있다.

그리고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 총액 한도 내에서 근무실적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4등급 이상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하고 최고-최저 등급간 지급률의 차이는 50%p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 비율도 최고는 20% 이내, 최저는 10% 이상으로 강제 배분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총액 범위 내에서 최하등급은 정원의 10% 이상, 최고등급은 20% 이내에 지급했어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7. 8. 24. 경상북도 예산담당관실로부터 2017년 경영평가 결과를 통지 받고 아래〔표〕와 같이 정당한 최고 등급(S등급) 인원을 5명으로 배분하지 않고 6명으로 인원비율을 산정한 뒤 같은 해 9. 20. 성과급 145,808천 원을 지급하였다.

그 결과 A등급으로 지급받아야 할 1명이 최고등급(S등급)으로 성과급을 지급받게 되어 성과급 1,074천원 정도가 더 지급되었다.

[표] 성과급 등급별 인원 비율 현황

총원	최하등급(C등급)			최고등급(S등급)		
	10% 이상	집행인원	적정여부	20% 이내	집행인원	적정여부
29명	2.9명 이상 (≒최소3명)	3명	적정	5.8명 이내 (≒최대5명)	6명	부적정

조치할 사항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원장은

앞으로는 등급별 인원비율을 위반하여 최고등급 인원을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피복비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II-②-나. 세부집행요령에 따르면 피복은 업무 성격상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경비원, 청소원 등 통일된 복장이 필요하여 구입할 경우 회계부서에서 일괄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피복비를 집행할 때에는 근무 중 상시 착용할 복장이 필요하거나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집행하여야 타당하고, 적어도 구매한 피복은 개인적 용도로 활용하거나 임직원의 복리후생차원으로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19. 11. 5. 직원 단체복이라는 명목으로 51벌의 등산복을 구매하여 지급하는 것을 비롯하여 최근 3년간 근무복이 아닌 직원 복리후생차원의 사실상 의류비 지원으로 피복비를 집행하고 있었다.

그 결과 피복비 예산 편성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관련 예산 33,628천 원이 집행되었다.

[표] 피복비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지출연도	품목	1인당 지출금액	지출금액
합계			33,628
2017년	자켓(39명)	250	9,750
2018년	자켓(38명), 셔츠(24명)	201	12,454
2019년	등산복(51명)	224	11,424

조치할 사항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원장은

앞으로 피복비를 예산편성 규정에 맞게 편성 및 집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기술가치평가 없이 특허 등 기술출자
소 관 청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기술출자관리규정」 제4조에 따르면 기술출자를 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책임자는 기술출자를 받고자 하는 영리법인 등 외부기관(기술출자를 통해 신규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이 당해 연구성과물을 성공적으로 실용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경영자의 경영능력 및 의욕 정도, 보유 기술수준, 자금력 등을 기준으로 사전 조사·분석하도록 되어 있고,

사전조사 결과 실용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사업심의위원회 및 원장에게 사전조사의견을 포함한 기술출자의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르면 기술출자금은 공인평가기관의 현물출자용 기술가치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술출자를 의뢰한 기업은 기술가치평가액 기준을 상호협의 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 보유한 지적재산권, 노하우 등 연구성과물을 외부기관에 출자할 때에는 ① 기술개발책임자의 실용화 가능성 사전조사 및 기술출자계획 수립 ② 공인평가기관 현물출자용 기술가치평가 및 협의, ③ 연구사업심의위원회 및 원장의 기술출자의뢰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7. 8. 28. 고순도 산화아연의 제조방법을 (주)에스아이엠에 출자하면서 공인평가기관의 현물출자용 기술가치평가 없이 기술출자금을 확정하는 등 아래 [표] 기술출자 현황과 같이 총 7건의 특허 또는 노하우를 기술출자하면서 단 한차례도 기술가치평가 없이 임의금액을 기준으로 해당기업과 협의 후 기술출자금을 확정하였다.

[표] 기술출자 현황

(단위 : 천 원)

기술명	기술출자금	약정상대자	약정일	형태
고순도 산화아연의 제조방법	10,000	(주)에스아이엠	2017.8.28.	특허
폴리케톤 다공성막의 제조방법등	10,000	(주)멤브레어	2018.10.4.	특허
페슬러지내 고효율 재생방법 관련 노하우	10,000	(주)디에스테크놀로지	2019.8.30.	노하우
분체 충전용 매쉬 필터 관련 노하우	10,000	(주)위드텍	2019.12.18.	노하우
플레이트 지그를 포함하는 연료전지용 백금적층시스템 관련 노하우	10,000	(주)진성하이테크	2020.2.18.	노하우
금속, 세라믹 및 플라스틱 이중 복합재	10,000	(주)세원텍	2020.2.10.	노하우
금속간 클래드 소재 제조	10,000	(주)엔와이테크	2020.2.10.	노하우

뿐만 아니라 노하우의 경우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의뢰 및 승인도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기술출자를 확정하는 등 위 규정과 달리 운영하고 있었다.

그 결과 연구원이 보유한 특허, 노하우의 기술가치평가 등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기술출자금이 확정되었다.

조치할 사항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원장은

앞으로 기술출자관리규정과 다르게 기술가치평가 없이 임의로 기술출자금을 확정하거나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및 승인 없이 기술출자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연구수당 과다 지급
소 관 청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관 계 부 서 ☁☁☁, 기업혁신지원실, ♥♥♥ 등
내 용

「연봉급여규정」 제5조에 따르면 별도의 연구개발과제나 프로젝트를 수행중인 담당자에게는 연구원장이 정하는 성과급(인센티브)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탁사업 연구수당 지급지침」 제3조에 따르면 연구수당의 지급은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르고,

같은 지침 제4조에 따르면 연구수당의 산정기준은 지원기관에서 정해진 지침의 비율*을 따르며,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운용요령에 따라 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산정

그리고 같은 지침 제5조에 따르면 연구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1에서 정한 비율로 지급하고 지원기관의 정해진 지침에 따라 사업비 편성이 완료된 경우일지라도 연구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별표1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별표 1에 따르면 연구수당 지급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인건비 금액이 30,000천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인건비금액의 20%를, 인건비 금액이 30,000천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인건비 금액별로 인건비 금액의 최대 18%에서 15%정도를 연구수당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표] 인건비금액대별 연구수당 편성기준(별표 1 재구성)*

(단위 : 천원)

인건비금액	연구수당지급 계산방식		인건비 대비 편성가능비율
30,000 이하	A	지원기관에서 정해진 비율의 100% 가능	최대 20%
30000 ~ 50,000	B	A + 3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한 연구수당 증가금액의 80%까지 가능	최대 18.4%
50000 ~ 100,000	C	B + 5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한 연구수당 증가금액의 60%까지 가능	최대 15.2%
100,000 초과	D	C + 1억원 초과금액에 대한 연구수당 증가금액의 40%까지 가능	-

따라서 위 관서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위 지침에 따라 인건비 금액 구간별로 편성가능한 금액을 정확히 산정한 뒤 예산편성 및 집행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5. 12. 2.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원받은 2014년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¹⁾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인건비 금액별 연구수당 편성 가능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지침과 달리 정당한 연구수당 예산액 9,440천 원보다 960천 원을 과다하게 편성, 2017. 4. 10.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연구 참여자 6명에게 연구수당 10,400천 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관서에서는 위 지침은 적용하지 아니한 채 지원기관의 사업비 집행요령상 연구수당 편성범위인 인건비의 20% 수준으로 일률적으로 연구수당을 편성, 최근 3년간 총 32건의 연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당한 연구수당 예산액 224,061천 원보다 28,058천 원을 초과한 계 252,120천 원을 연구수당으로 지급하였다.

그 결과 연구수당 28,058천 원이 과다지급 되었고, 회계질서가 문란케 되었다.

조치할 사항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원장은

과다지급된 연구수당 28,058천 원을 회수하거나 향후 감액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 과제명:1,500Mpa이상 탄소복합소재 적용 panel type 경량 고강도 도어 보강재 개발

경 상 북 도

시정 및 통보(시정완료)

제 목 탄소성형부품 상용화인증센터 건축공사비 과다 계상 등
 소 관 청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위 관서에서는 2019. 9. 30. ♪♪♪♪ 주식회사(대표 b b b)와 탄소성형부품 상용화인증센터 건립공사 계약(계약금액 : 3,828백만원)을 맺고, 2019. 10. 10. 착공하여 2020.10.03.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공사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기간	사 업 비(백만원)			도급자	비고
			계	도급액	관급액		
탄소성형부품상용화 인증센터 건립공사	연구소 2,995.74㎡신축	2019.10.10. ~ 2020.10.03.	5,123	4,118 (변경)	1,005	(주)♪♪♪♪ b b b	

1. 품질관리활동비 부적정 계상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르면 연면적 660㎡이상 건축공사에 대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관련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 중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시험관리인은 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중에서 최하위 등급자로 정하고,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위 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탄소성형부품 상용화인증센터 건립공사는 사업비 51억 원, 연면적 2,995.74㎡로 초급 품질관리 대상이고, 해당 현장은 초급 품질기술자 1명이 배치되어야 하며 이는 시험관리인에 해당 된다.

따라서 위 건축공사 현장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직접노무비에 계상해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시험관리인의 인건비가 간접노무비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직접노무비에 사업비 62,339천원(제경비포함)이 이중계상된 상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공사하도급 관리·감독 부적정

위 관서에서는 탄소성형부품 상용화인증센터 건립공사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하도급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

[표] 공사현황

(단위 : 천 원)

계약일자	공사명	계약금액	하도급금액	하도급업체	건설업면허	하도급율	대금지급
2020. 3. 10.	탄소성형부품상용화인증센터 건립공사	267,483	240,000	ㅇㅇㅇㅇ(주)	토공사업	89.73%	직불합의

가. 하도급 설계변경 계약 미준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하도급 대금의 증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관서에서는 2020. 3. 16. 감리로부터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도서를 제출 받아 같은 달 20일 변경계약을 완료하였고, 변경내용 중 하도급 부분에 관한 공정도

포함되어 있어 토공사 부분 원도급금액이 최종 317,214천원(증49,731천원)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발주청에서는 설계변경에 관한 내용을 □□□□에 통보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하도급자 □□□□에 위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어 감사일 현재 여전히 하도급 계약금액이 변경²⁾되지 못하고 있었다.

나. 하도급 대금 직접지불 소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르면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주), □□□□(주), 연구원은 하도급 대금 직불을 합의하였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20. 4. 13. 공사감리원으로부터 제1회 기성검사를 제출받고 이를 처리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이유없이 계약상대자인 ♪♪♪♪에 하도급대금(203,500천원)을 포함한 1,339,400천원을 지급하였다.

뿐만아니라 감사일 현재까지도 □□□□(주)은 하도급 대금을 계약상대자인 ♪♪♪♪로부터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연구원에서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 받아야 할 하도급 업체가 자금을 적기에 수령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주었다.

조치할 사항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원장은

- 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 및 7절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에 따라 과다계상된 사업비 62,339천원(제경비포함)을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시정)
- ②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연구원에서 2020.7.7.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

2) 최초 하도급 계약 비율 89.73%에 따라 하도급 금액 284,900천원(증44,900천원)으로 변경

수령 및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보[시정완료])